

노어노문학과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2022. 6. 1 제정
<문과대학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문과대학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의해 방문학생으로 선발된 노어노문학과 학생들의 해외연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선발) ① 해외연수 대상은 2004학번 이후 본교 문과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제1전공이 노어노문학과인 당 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제1전공을 노어노문학과로 편입 및 전과한 학생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②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자의 경우 토르플 1급 이상 자격증 소지 시 지원이 가능하다.

③ 지원자는 교양러시아어초급, 교양러시아어중급,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중급러시아어 I, 중급러시아어 II, 중급러시아어회화 I, 중급러시아어회화 II 중에서 6과목 이상의 수강 이력을 필요로 한다.

④ 대상자는 매 학기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3조 (연수기관) 해외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스크바국립대학교
2.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3. PYДH(민족우호대학교)
4. 키예프국립대학교
5. 키예프외국어대학교
6. 부랴트국립대학교

제4조 (의무사항) ① 연수 기간은 1학기로 하며 해외연수 지원자는 아래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와 성적증명서의 영문명은 철자 및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반드시 여권 영문명과 동일해야 한다.

1. 문과대학 해외 파견학생 허가신청서
2. 노어노문학과 해외연수생 서약서
3. 노어노문학과 해외연수 지원서(학업계획서)
4. 성적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사본
6. 개인정보 동의서
7. 해외파견대학 입학허가서(추후 제출)
8. 개인 보험가입확인서(추후 제출)

② 해외연수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추후 학과 홈페이지에 등재를 전제로 한다.

- 제5조 (학점인정) ①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은 연수 후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학과사무실에 학점 인정요청서(학교 별도양식)를 제출한다. 학과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를 열어 학점인정 처리를 한다.
- ② 학점은 주당 3시간씩 16주(총 48시간)를 3학점 기준으로 인정한다.
 - ③ 학기당 15학점의 한도 내에서 환산하여 인정한다.
 - ④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하다.

제6조 (준용)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문과대학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